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송기현 의원이 대표발의(2024.2.13.)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4.3.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양식 >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2. 아울러,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등 11인)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중앙행정기관(19부), 중앙행정기관(19청), 중앙행정기관(2원), 중앙행정기관(4처), 중앙행정기관(7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 소속기관(농을), 산하기관(농병), 지자체 축산부서, 축산단체



주무관

이용호

서기관

대결 2024. 2. 23.

이상훈

축산정책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축산정책과-868

(2024. 2. 23.)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330

팩스번호 044-868-0483

/ player4417@korea.kr

/ 대한민국 공개